국무조정실 공고 2023-052

국제개발협력 유공 포상 관련 공고

‘개발협력의 날(11.25)’ 계기, 국제개발협력(ODA) 활동을 통해 **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, 수원국과의 우호관계 증진** 및 **우리나라 국격 제고** 등에 기여한 **국내외 유공자**를 발굴하여 **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**하고자 다음과 같이 **정부 포상 계획**을 공고하오니 **유공자를 적극**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포상 규모(안) 및 종류

○ 포상규모 : 22명

○ 포상종류 : 훈장, 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

구 분		정 부 포 상			
		훈장	포장	대통령표창	국무총리표창
총계	22	2	3	8	9

※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2. 포상후보자 자격요건

※ 기관·단체는 단체 표창 대상이며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(표창만 수여)

○ **ODA 분야**에서 **우수한 성과 창출**에 기여한 국내·외 유공자 및 기관

- **(국내)** 수원국의 **경제·사회 발전** 및 **복지증진** 등 **우수한 ODA 성과**를 **창출**하고 **수원국·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**에 기여한 자(기관 포함)

  * ▵(민간) 시민단체, 대학·연구기관, 기업 등 국제협력 활동 종사자 ▵(공공) 일선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

- **(해외)** ODA 사업의 **원활한 추진 및 성과 창출, 우호협력 증진**에 기여한 **수원국 공무원 및 민간인**(기관 포함), **국제기구 소속 관계자**

○ 사업간 연계,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**ODA 효과성 제고** 및 **ODA 통합 추진**에 **기여도**가 높은 자(기관 포함)

○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

구 분	훈 장	포 장	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
추천대상 수공기간 (개인 및 기관·단체 공통)	15년	10년	5년

<예외> 추가 수공기간의 적용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*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의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

*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(단,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,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)

3. 포상후보자 추천

○ 추 천 자 : 개별 기관·단체 및 국민 개인 누구나 추천 가능

○ 추천방법 :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

* (이메일) odakorea@korea.kr

** (우 편) (우30107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동 426호 (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)

○ 추천기한 : **'23년 6월 12일(월)**

※ 추천기한 경과 후 이메일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

※ 등기우편 제출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접수여부 확인 바람

○ 추천 시 제출서류 : <붙임> 참조

○ 포상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

-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, 포장, 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 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
- 포상후보자의 **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**를 **반드시 사전 확인**

※ 상세내용은 「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」을 반드시 참고(www.sanghun.go.kr)

<재포상 금지기간> ※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-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*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

<포상 제한>

- 단체표창(기관포함)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※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<추천제한(내국인)>

1.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2. 형사처분
   - 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- 나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- 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- 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- 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- 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 - 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  - 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3.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
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5.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6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7.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8.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※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<추천제한(공무원)>

1.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2. 형사처분

   가)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)

   ※ 단, 재직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,

   ※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

3.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

   가)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
   나)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
   ※ 단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
   ※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
4.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제3항 제1호 및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

   ※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

5.「상훈법」제8조 및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  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6.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
   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https://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7.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 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<추천제한(외국인의 경우 추가 적용)>

1.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또는 단체(기관)
2. 과거 망언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3.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,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4. 공개 검증 및 심사

- ㅇ 포상 후보자의 명단·공적 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정부포상 운영의 투명성 제고
- ㅇ 국무조정실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포상대상자 최종 선정

5. 포상식

- ㅇ 2023.11.25.(금) 개발협력의 날(예정)

6. 기 타

- ㅇ 문의처 :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 양희경 사무관(044-200-2162)
-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포상대상자로 선정시 개별 통보

붙 임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

① **추천대상자 명단 1부(기관별 취합 및 추천순위 부여)**

* 추천 대상자 및 추천자의 연락처 반드시 기재(추가 자료 요청 및 사실 확인 시 필요)

② **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**

* 주요공적 실적 요약(양식에 맞게 모두 작성)

③ **공적조서 1부**(온라인 제출시, '**한글파일**'로 제출) ⇒ **상훈시스템 입력사항**

* 공적은 **반드시 2500자 이상** 구체적으로 기술하고, 실적은 계량화
(글자수 미충족시 시스템 입력 불가)

* 공적기간(공적시작일), 주요 경력, 학력, 과거 포상기록 등은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

* 공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임

* 공적 요지는 요점만 정리(마무리는 "기여함")

※ **외국인(외국단체)의 경우, 공적조서 영문본 및 번역본 모두 제출**

④ **이력서 1부**(본인 **서명 또는 날인, 사진** 부착하여 '**PDF 파일**' 제출)

※ **외국인(외국단체)의 경우, 영문본 및 번역본 모두 제출**

⑤ **정부포상 동의서 1부**(**서명 또는 날인**하여 '**PDF 파일**' 제출)

⑥ **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**(**서명 또는 날인**하여 '**PDF 파일**' 제출)

⑦ **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록증**

* 개인도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제출

⑧ **정부포상후보자 추천서 2부**(온라인 제출시 '**한글파일**'로 제출)

* 기관·단체가 아닌 개인이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